

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541호

다. 발의일자 : 2019. 3. 29

라. 회부일자 : 2019. 4. 3

2. 제 안 사 유

- 정수지나 배수지 등의 수도시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품질 및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,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정수지나 배수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, 정수지나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40조의5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수도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협의 완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정수지나 배수지 등의 수도시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품질 및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,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시공관리·품질관리·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수지, 배수지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특성상 염소 성분이 포함된 수돗물이 장시간 체류하고 있고 운영기간 경과에 따라 시설 내부 표면의 시멘트 중성화가 일어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수돗물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, 이의 일환으로 내부 방수·방식공사를 시행하고 있음.

따라서 안 제40조의5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수도사업자의 책무와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내부 방수·방식공사시 시공관리, 품질관리,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- 다만, 안 제40조의5제2항 중 시공관리, 품질관리,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제5항에 따른 감리 용역(제도)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본 조례안의

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.

개정안	수정(안)
<p>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40조의5(수도시설 유지관리)</p> <p>① 시장은 정수지·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·방식 공사의 경우 <u>시공관리·품질관리·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40조의5(수도시설 유지관리)</p> <p>① 시장은 정수지·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·방식 공사의 경우 「<u>건설기술진흥법</u>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. 또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.</p>

- 한편, 배수지의 경우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도 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수·방식공사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,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.

[참고자료]

□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(정의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~ 7. 생략
 8. “건설사업관리”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, 타당성 조사, 분석, 설계, 조달, 계약, 시공관리, 감리,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 9. ~ 15. 생략
-

□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(정의), 제39조의2(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~ 4. 생략
5. “감리”란 건설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,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·품질관리·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.

제39조의2(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)

-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(이하 “건설사업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1.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
 2.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
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④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.
 - ⑥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,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